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서

2014. 12. .

성 동 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수탁기관”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구”는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다음의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1.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2.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3.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를 향상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 대상지역) 이 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 지역은 성동구 관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한다.

② 센터인력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맞게 “수탁기관”

이 선발, 임면하고 “구”에게 임면 내용을 보고한다. 센터장은 관련 분야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로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의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사회와 대상 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구”와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소 및 센터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조직과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내용의 신설, 삭제 및 수정 전반에 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문제 발생 시 예외로 한다.

⑤ “구”와 “수탁기관”은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주민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의 관련 법규·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기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추진실적을 “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력의 추가 운영이 필요한 경

우 “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탁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등 각종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센터운영 및 재산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센터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구”에게 있고 관리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다.)

⑦ “수탁기관”은 사업기간 회계 연도 만료 또는 협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평가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등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분기별로 “수탁기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시비 교부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구”의 예산과 “수탁기관”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구”가 결정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수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의 승인을 얻어 “구”의 사업비 지급 이전에 “수탁기관”의 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수탁기관”은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구”의 보완·시정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기관”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시설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협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① 협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구”의 소유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각종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본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는 사업추진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 “구”는 지도·감독 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행정지원) “구”는 “수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중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책임의 한계·범위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등의 정도·책임의 한계 등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며 “수탁기관”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① “수탁기관”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 체결 및 이행을 비롯하여 위·수탁사무 추진 상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약이 종료되어도 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으로 “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 운영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로 별도 계약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① “구”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해지 통보 한 달 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수탁기관”이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감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구”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구”의 상위기관에서 사업이 종료되어 위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약정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구”에 속하는 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장비·기자재 포함)을 지체 없이 “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이 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성동구의 조례,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수탁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구”와 “수탁기관”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로 작성하고, “구”와 “수탁기관”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4년 12월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구청장 정 원 오

“수탁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단 장 김 현 수